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제도 및 관행 개선

-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2011년 1/4분기에 총 17건의 금융제도 및 관행을 개선함.
- 서민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금융서비스 이용 시 발생 가능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였으며, 소비자에 대한 공시 및 고지 의무도 강화함.
 -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시 부분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, 2011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 변경을 완료할 계획임.
 - 장기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급여 보상한도일 이후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하였으며, 동일 질병인 경우에는 병원 이전 시에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함.
 - 신용정보 조회가 불필요한 체크카드의 경우 ‘신용정보 조회 동의란’을 삭제함과 동시에 신용정보 조회동의를 받지 않도록 모집인 교육을 강화하며, 결제계좌 잔액 부족으로 리볼빙서비스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함.
 - 금융분쟁조정세척 개정으로 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대한 전자우편(E-mail) 회신도 가능하도록 회신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,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관련 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상호저축은행 재무제표 공시주기를 반년에서 분기로 단축함.
- 금융회사와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고 교섭력이 약한 영세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권을 강화함.
 -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한 금융회사 압류 및 채권추심 금지를 지도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함.
 - 신용불량 이력자에 대해서는 리스크 부담이 없는 가계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, 현재의 신용상태를 반영한 여신심사를 통하여 여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 대출금지 관행을 개선함.

(1/4분기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제도·관행 개선실적, 금감원, 5/31)